

제3회 보인고등학교운영위원회

본회의 회의록

학교장위원	위원장

일시 : 2019년 08월 16일(금) 11:00

장소 : 보인고등학교 회의실

회 순

1.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2. 국민의례
3. 개회사
4. 학교장 인사
5. 위원장 개의 선언
6. 보고사항 및 회의록 승인
7. 안건심의
8. 기타사항 협의
9. 폐회

회 순

- 제1안 원어민교사 재계약 건
- 제2안 2019학년도 1기 방과후학교 정산안
- 제3안 2019학년도 2기 방과후학교 초과 시수안
- 제4안 2019학년도 3기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안
- 제5안 2019학년도 3기 방과후학교 부교재 사용 승인 및 환불 규정 승인안
- 제6안 2019학년도 축구부 운영경비 학교발전기금 학교회계 편입안
- 제7안 2019학년도 1학기 창의적체험활동(교외) 정산안
- 제8안 2019학년도 3학년부 1학기 논술 위탁프로그램 정산안.
- 제9안 2019학년도 지방자치단체보조금 및 교육비특별회계 목적사업비 지원금 신청안.
- 제10안 2019학년도 보인고등학교회계 세입.세출 제1차 추가경정 예산서안.
- 제11안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변경안.
- 제12안 기타협의사항. 끝.

간 사 ○○○ 성원보고 후 2019학년도 제3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개회선언하다.

간 사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 무더운 날씨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이 두루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하다. 올해 자사고 평가대상 13개교 가운데 8개(경희.배재.세화.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자사고가 운영성과평가에서 재지정 점수 70점을 밑도는 점수를 받아 지정취소가 결정됐다. 보인고는 내년엔 재지정 평가를 받는데, 교육계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국정과제인 만큼 어려움이 예상된다. 대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흔들림 없이 교육 기본에 충실하길 바라며,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의안건에 심도 있는 의견제시를 요청하다.

학교장 ○○○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 후, 2학기 준비와 더불어 자기주도학습 지도관리 및 생활지도 등을 강화하여 향후 진행되는 교육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다. 지난 7월 19일에 보인 천년제를 실시하여 교과활동, 동아리 활동, 방과후 활동을 통하여 배우고 익힌 적성과 소질, 잠재 능력의 계발로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 개개인의 재능과 흥미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대학 수시입학원서 접수 대비 학생의 진로 및 적성을 고려하여 3학년담임과의 면담 및 상담을 통해 학생 개개인에게 최선의 선택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자사고 재지정이 취소된 서울 지역 자립형사립고에서 “지정 취소 효력 정지”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학생수 감소와 학교재정 악화 등이 초래돼 자사고 유지가 불가능해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임을 설명하다. 향후 자율형사립고 재지정에 대비하여 보다 혁신적이고 발전적인 학사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항상 학교 교육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학부모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인고등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의안건에 심도 있는 의견제시 및 논의를 요청하다.

위원장 ○○○ 13명의 위원 중 13명 전원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학년도 제3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개의 선포하다.(의사봉 3타)

간 사 ○○○ 전회의록 낭독하다.

위원장 ○○○ 전회의록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들께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한 후 회의록 승인하다.(의사봉 3타)

위원장 ○○○ 안건 제1안 원어민교사 재계약안을 상정하다.(의사봉 3타) 제안 설명 요청하다.

부장교사 ○○○ 현재 원어민 교사(Andrew Pike)는 학생교육에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교육자로서 학교의 위상 제고에 기여함이 인정되며,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공백 없는 교육과정 운영 및 자율형 사립고의 위상에 맞는 질 높은 외국어 교육 제공하고자 안건에 상정하게 됨을 설명하다.

*** 주요내용

1. 원어민 교사 활용 방안

가. 정규교과 운영

- 1) 영어회화, 심화영어, 창의적 체험활동 등 정규 교육과정 상의 영어 수업 운영
- 2) 학교의 필요 시 영어심화 수업 및 부진아 수업, 사회적 배려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

나. 정규교과 외 운영

- 1) 영어 관련 동아리 : 특목고에 버금가는 명문고로의 도약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영어토론 동아리 활성화 및 대회 참여에서 원어민 교사의 참여가 필수적임.
- 2) 방학 중 영어캠프 운영 : 영어캠프 시행으로 영어 우수자 및 부진아에 대한 영어활성화 방안 유지
- 3) E0Z 개방 및 운영 : 영어전용교실(E0Z)을 개방하여 자유롭게 원어민 교사와 회화연습시간 확보 가능
- 4) 교사연수 : 영어과 및 영어 관심교사들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가능

2. 계약관련 내용

가. 현 원어민교사 계약관련 내용

- 1) 교사 명 : Andrew Pike(미국)
- 2) 계약기간 : 2018년 8월 18일~2019년 8월 17일(1년)
- 3) 급 여 : 교육청 기준 270만원(Level A)
- 4) 수당 및 복지사항 : 주거지원비, 4대 보험가입

나. 원어민교사 재계약 내용

- 1) 재계약 기간 : 2019년 8월 18일~2020년 8월 17일
- 2) 급여 및 복지사항 : 교육청 기준 270만원(Level A) 전년도 동일금액

위원장 ○○○ 다른 의견 확인하다.

위원들 의견 없음을 재청하다.

위원장 ○○○ 제1안 원어민교사 재계약안을 표결에 붙이다. 참석위원 13명 전원 찬성에 거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의사봉 3타)

위원장 ○○○ 다음 안건 제2안 2019학년도 1기 방과후학교 정산안을 상정하다.(의사봉 3타) 제안 설명요청하다.

부장교사 ○○○ 제1기 방과후학교 예산을 정산하고 운영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여 정규 수업을 보완하고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게 되었음을 설명하다.

***** 주요내용**

1. 제1기 방과후학교 정산내역 (단위: 원)

정수 결의액	수입			지출			
	학생수입	교육청지원 (자유수강권)	수입합계	강사수당	수용비	환불	지출합계
55,398,770	54,286,140	1,112,630	55,398,770	50,318,000	1,289,823	3,790,947	55,398,770

2. 환불내역

환 불 사유	금 액 (원)
교육비지원대상선정	36,480
중도포기	1,239,327
초과징수	2,970
폐강	2,512,170
합 계	3,790,947

위원장 ○○○ 환불사유 중 중도포기에 대하여 질의하다.

부장교사 ○○○ 대부분 1학년으로 과도한 방과후수업 신청으로 자기주도학습 시간이 부족하여 일부 강의를 포기하게 되었음을 설명하다.

위원장 ○○○ 다른 의견 확인하다.

위원들 의견 없음을 재청하다.

위원장 ○○○ 제2안 2019학년도 1기 방과후학교 정산안을 표결에 붙이다. 참석위원 13명 전원 찬성에 거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의사봉 3타)

위원장 ○○○ 다음 안건 제3안 2019학년도 2기 방과후학교 초과 시수안을 상정하다.(의사봉 3타) 제안 설명요청하다.

부장교사 ○○○ 2기 방과후수업 시수가 담당 수업 시수 기준 30% 이내를 초과한 경우가 발생하였으나 주문형태의 수업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며, 업무 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로 인정됨을 설명하다.

***** 주요내용**

1. 담당 시수 초과 방과후수업 내용 및 사유

교 사 명	담당 시수	방과후 수업 초과 내용 및 사유				
		대상	시간	강좌명	장소	기타
○ ○ ○ (부장 교사)	14시간	1, 2학년	월~금 1교시	축구기초게임반	대주관	주문형강좌
		1, 2학년	월~금 2교시	탁구기초반	대주관	주문형강좌
		1학년	월~금 3교시	바디서킷반	체력단련실	주문형강좌
		* 1주 7시간(14시간 기준 2.8시간 초과)				
* 체육계열 진학 희망 학생 주문형 수업 운영으로 불가피하며, 업무 처리에 지장 없음 인정						

위원장 ○○○ 2기 방과후는 방학기간으로 알고 있다. 종료 후 안건 상정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다.

부장교사 ○○○ 2기 방과후수업 선택형 단계에서는 초과되지 않았으나, 학생들이 요청하는 주문형 강좌로 인하여 초과되었음을 설명하다. 방학기간으로 정규수업, 교무업무 등에 지장이 없었으며, 방과후 스포츠 활동이 학생들의 자기리더십과 학교생활적응에 도움이 되어 진행하게 되었음을 설명하다.

위원장 ○○○ 방과후 스포츠 활동이 교과 성적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도 있고, 스포츠 활동에서 오는 성취감이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자신감과 자존감을 심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된다. 다른 의견 확인하다.

위원들 의견 없음을 재청하다.

위원장 ○○○ 제3안 2019학년도 2기 방과후학교 초과 시수안을 표결에 붙이다. 참석위원 13명 전원 찬성에 거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의사봉 3타)

위원장 ○○○ 다음 안건 제4안 2019학년도 3기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안을 상정하다.(의사봉 3타) 제안 설명요청하다.

부장교사 ○○○ 2019학년도 3기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안을 설명하다.

***** 주요내용**

1. 제3기 방과후학교 운영 개요

가. 수업기간 : 2019년 9월 2일(월) ~ 11월 21일(목)

나. 방과후학교 시간 운영

구분	시간	내용	비고
방과후1	16:30 ~ 17:20	방과후수업 1 또는 자기주도학습 1	50분
식사	17:20 ~ 18:20	저녁식사	60분
방과후2,3	18:20 ~ 20:10	방과후수업 2,3 또는 자기주도학습 2,3	100분
자기주도4	20:30 ~ 21:55	자기주도학습 4	85분

2. 준비 일정

날짜	진행 사항	담당
8월 19일(월)~8월 23일(금)	주문형 신청	개별 학생
8월 19일(월)~8월 21일(수)	1. 수요조사 2. 교과협의회 실시 - 개설 강좌 협의	학년부
		교과부
8월 22일(목)	보인아이 강의개설 마감(오전까지)	개별 교사
8월 23일(금)	가정통신문, 강의개설목록 유인물 배부	교육연구부
8월 24일(토)~8월 25일(일)	수강신청	학생
8월 26일(월)~8월 30일(금)	수강신청 조정 및 강의실 배정	교육연구부
9월 2일(월)	방과후학교 시작	교육연구부

3. 강좌 개설 정원

10명 이상으로 하되, 학생들이 희망하는 소수 주문형 강좌일 경우 학교장의 승인에 의해 실시할 수 있음.

4. 저소득층 수강료 지원 (근거 : 서울시 교육청 2019 방과후학교 길라잡이 53쪽)

- 자유수강권 : 교육급여 수급자, 법정 한부모 자녀 등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1인당 지원 범위 내에서, 월 지원 금액 및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 수를 제한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
- 저소득층 자녀수강료 지원 : 자유수강권 대상 학생 외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방과후학교 사업비 예산 범위 내에서 수강료 지원

5. 교사 수업 시수 (근거 : 서울시 교육청 2019년 방과후학교 길라잡이 13쪽)

- 학기 중 : 담당 수업 시수 30% 초과 불가
- 방학 중 : 담당 수업시수 1.3배 초과 불가
- * 학교 사정상 부득이하게 준수시간을 초과하여 실시하는 현직교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정규 수업 및 교무업무를 저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별도 안건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운영

6. 강사료 책정

- 수강료는 강사료, 프로그램 운영 시수, 수용비, 수강 학생 수, 프로그램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책정.
- 학교알리미,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방과후학교 운영상의 투명성 확보
- 주간 : 10분 기준 1만원, 야간(석식후) : 10분 기준 1만 2천원
(주변 학교 대비 현실적인 기준으로 책정)

7. 수용비 책정 (근거 : 서울시 교육청 2019년 방과후학교 길라잡이 58쪽)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수용비를 강사료 대비 6% 이내로 책정.

위원장 ○○○ 학과후학교의 목표가 창의 융합형 인재 육성 및 학생 중심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경험 제공에 있듯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학생들의 진로 적성 개발에 도움이 되길 요청하다. 다른 의견 확인하다.

위원들 의견 없음을 재청하다.

위원장 ○○○ 제4안 2019학년도 3기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안을 표결에 붙이다. 참석 위원 13명 전원 찬성에 거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의사봉 3타)

위원장 ○○○ 다음 안건 제5안 2019학년도 3기 방과후학교 부교재 사용 승인 및 환불 규정 승인안을 상정하다.(의사봉 3타) 제안 설명요청하다.

부장교사 ○○○ 2019학년도 3기 방과후학교 부교재 사용 승인 및 환불 규정 승인안을 설명하다.

***** 주요내용**

1. 부교재 사용 근거(2019 방과후학교 길라잡이 14쪽)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재는 강사(업체)가 학교별, 프로그램별로 수준에 따라 개발하여 사용되되, ‘도서와 재료 선정 기준’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외부 교재 및 재료를 활용할 수 있음.

2. 수강료환불 기준 근거 (2019년 방과후학교 길라잡이 59쪽 수강료 환불기준 준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월 기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시간의 50%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3. 부교재 목록 및 수강료 환불 안

가. 별첨 1: 2019학년도 3기 방과후학교 부교재 사용목록

나. 별첨 2: 2019학년도 방과후학교 환불규정

위원장 ○○○ 다른 의견 확인하다.

위원들 의견 없음을 재청하다.

위원장 ○○○ 제5안 2019학년도 3기 방과후학교 부교재 사용 승인 및 환불 규정 승인안을 표결에 붙이다. 참석위원 13명 전원 찬성에 거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의사봉 3타)

위원장 ○○○ 다음 안건 제6안 2019학년도 축구부 운영경비 학교발전기금 학교회계 편입안을 상정하다.(의사봉 3타) 제안 설명요청하다.

부장교사 ○○○ 학교발전기금회계로 접수된 축구부 운영비(운동부 육성지원금)를 학교회계로 전출하여 편입 후 학교회계로 아래 용품의 경비를 집행하고자 안건 상정하게 됨을 설명하다.

***** 주요내용**

1. 지원내역(학교발전기금 학교회계로 편입 후 집행)

연번	품명	규격	수량	단가(원)	공급가액(원)	세액(원)	비고
1	아디다스 바람막이 자켓	D95937	32	64,350	1,872,000	187,200	
2	아디다스 하계 트레이닝복	DT5287	32	61,100	1,777,455	177,745	
3	아디다스 테크핏 세트	DW4147	32	63,700	1,853,091	185,309	
4	아디다스 다운 조끼	CK0961	32	116,350	3,384,727	338,473	
5	마크비 (자수번호)		32	500	14,545	1,455	
6	마크비(엠블럼)			2,000	58,182	5,818	
	계		160		8,960,000	896,000	

※ 합계금액(공급가액+세액): 금구백팔십오만육천원(금9,856,000원)

위원장 ○○○ 학교발전기금 중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의 조성 방법에 대하여 질의하다.

부장교사 ○○○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은 주로 보인고를 졸업한 학생선수들의 프 로팀 입단 시 아마추어 육성자금으로 학교에 후원되고 있음을 설명하다. 최근 2019 FIFA U-20 월드컵 준우승으로 대한축구협회에서 본교 출신인 이재익 선수의 모교에 5,000,000원이 지원되었음을 설명하다.

위원장 다른 의견 확인하다.

위원들 의견 없음을 재청하다.

위원장 ○○○ 제6안 2019학년도 축구부 운영경비 학교발전기금 학교회계 편입안을 표결에 붙이다. 참석위원 13명 전원 찬성에 거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의사봉 3타)

위원장 ○○○ 다음 안건 제7안 2019학년도 1학기 창의적체험활동(교외) 정산안을 상정하다.(의사봉 3타) 제안 설명요청하다.

부장교사 ○○○ 2019학년도 1학기 창의적체험활동(교외) 정산안을 설명하다.

*** 주요내용

1. 사이언스 컬처 로드

(단위: 원)

실시일	참가인원	참가비	장소	수입	학교예산	지출
1차 (2019.4.6~4.7)	31	99,200	5.18공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3,075,200	126,900	3,202,100
2차(2019.6.8)	35	82,800	천안함 기념관 경희대 원자로센터	2,898,000	-	2,898,000

2. 발런티어 봉사활동

(단위: 원)

실시일	참가인원	참가비	장소	수입	학교예산	지출
1차(2019.3.30)	60	21,890	경기도 가평 꽃동네	1,313,400	6,620	1,320,020
1차 (2019.7.12~7.15)	16	142,500	국립 소록도 병원	2,280,000	11,000	2,291,000

3. 항공 캠프

(단위: 원)

실시일	참가인원	참가비	장소	수입	학교예산	지출
2019.6.10~6.11	40	103,000	KAI 예비에이전센터	4,120,000	-	4,120,000

4. 제주 영어 캠프

가. 일시, 장소, 참가 인원 : 2019. 7. 26.(금) ~ 7. 28.(일), 제주도 일대,
학생 34명 인솔교사 3명

나. 1인당 여행 경비 : 금497,210원(학생, 교사 동일 금액)

다. 기타 경비 : 사전 프로그램 강사료, 간식비

라. 세부 내역

(단위: 원)

구분	수익자부담		사회통합전형 운영지원금	학교 예산	비고
	1인당 금액	합계			
일반 학생(25명)	497,210	12,430,250	-	-	1인당 여행 경비 기준 사회통합전형 학생은 약 50%(25 만원) 지원. 지출 총액
사회통합 학생(9명)	247,210	2,224,890	2,250,000	-	
인솔 교사(3명)	-	-	-	1,491,630	
강사료	-	-	100,000	-	
간식비	-	-	158,140	-	
합계		14,655,140	2,508,140	1,491,630	18,654,910

위원장 ○○○ 국립 소록도 병원 봉사활동은 고교생 참여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다.
국립 소록도 병원 봉사활동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다.

부장교사 ○○○ 국립 소록도 병원 측에서 매년 보인고의 봉사활동에 대해 높게 평가를 해주어, 올해는 3차에 걸쳐 진행하게 되었다. 주로하는 봉사활동은 병원에서 한 선병으로 인한 휴유장애로 손과 발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봉사활동을 하게 되며, 식사 준비 및 수발, 세면시켜 드리기, 대화, 산책, 재활운동을 도와드리고 있음을 설명하다. 마을 어르신들께도 직접 각 가정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하며, 어르신께서 요구하는 사항을 직접 처리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위원장 ○○○ 다른 의견 확인하다.

위원들 의견 없음을 재청하다.

위원장 ○○○ 제7안 2019학년도 1학기 창의적체험활동(교외) 정산안을 표결에 붙이

다. 참석위원 13명 전원 찬성에 거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의사봉 3타)

위원장 ○○○ 다음 안건 제8안 2019학년도 3학년부 1학기 논술 위탁프로그램 정산안을 상정하다.(의사봉 3타) 제안 설명요청하다.

부장교사 ○○○ 2019학년도 3학년부 1학기 논술 위탁프로그램 정산안을 설명하다.

***** 주요내용**

1. 정산 내역

가. 위탁 업체 : (주)한경닷컴

나. 위탁 내역 : 제1기 자연논술

다. 정산 세부 내역

1) 제1기 자연 논술 정산 내역(단위: 원)

업체명	수강 인원	수강료 (1회)	정산내역						
			수입			지출			
			학생수입	자유수강권	수입합계	강사료	수용비 (3%)	환불	지출합계
한경	96	257,500	24,462,500	257,500	24,720,000	23,200,000	696,000	824,000	24,720,000

2) 부분징수 내역(단위: 원)

가) 수강생 중 부분 수강을 한 학생들 2명에 대하여 차시별 수업료를 부과하여 징수

나) 내용 및 명단

학번	이름	기관명	징수금액
305**	***	한경	51,500
308**	***	한경	77,250
308**	***	한경	25,750
311**	***	한경	51,500
소계			206,000

3) 자유수강권 지급 내역(단위: 원)

학번	이름	구분	기관명	수강료	자유수강권	실징수금액
30916	안영준	자연	한경	257,500	257,500	0

2. 만족도 조사 결과

가. 자연논술: 88.14% (96.17% 지속 희망, 2기 위탁 논술 지속 진행)

위원장 ○○○ 인문 논술 진행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다.

부장교사 ○○○ 인문 논술은 신청 인원이 너무 적어서 폐강되었음을 설명하다.

위원장 ○○○ 다른 의견 확인하다.

위원들 의견 없음을 재청하다.

위원장 ○○○ 제8안 2019학년도 3학년부 1학기 논술 위탁프로그램 정산안을 표결에 붙이다. 참석위원 13명 전원 찬성에 거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의사봉 3타)

위원장 ○○○ 다음 안건 제9안 2019학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목적사업비 보조금 신청안을 상정하다.(의사봉 3타) 제안 설명요청하다.

행정실장 ○○○ 지난 2019년 8월 7일에 예.결산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안건 심의를 하였고, 승인가결 되었음을 설명한 후 안건을 상세 설명하다.

[2019학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목적사업비 보조금 현황]

***지원금 예산 요구 총액 37건 369,530,000원**

과 목	예산액	산출내역	예산요구총액
송파구청 보조금	40,530,000	농어업인 학비 지원금	4,353,000
		한부모 가족 학비 지원금	2,177,000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1,800,000
		학교신청자물사업 LED 개선사업 지원금	30,000,000
		학교폭력예방 연극경연대회 지원금	2,200,000
소계		5건	40,530,000
교육청 보조금	308,240,000	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지원금	5,000,000
		3학년 무상급식비 지원금	180,816,000
		서울희망교실 지원금	2,100,000
		토요스포츠타이 감사비 지원금	1,680,000
		학생참여예산제 운영지원금	2,000,000
		기타수익자부담경비(기숙사비 지원금)	2,908,000
		기타수익자부담경비(교복비 지원금)	705,000
		학생안전체형교육비 지원금	1,000,000
		교육급여	43,408,000
		저소득층자녀 종식지원금	8,273,000
		저소득층자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금	3,970,000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일반클럽 운영지원금(2,400,000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우수클럽 운영지원금(축구)	1,600,000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금(차상위 및 차차상위)	17,087,000
		학교흡연예방사업 실천학교 지원금	2,800,000
		소규모테마여행 및 수련활동비 지원금	3,378,000
		CCTV 설치 지원금	6,000,000
		공기청정기 렌탈비 지원금	6,345,000
		특수교육대상자 학비지원금	3,676,000
		특수교육대상자 교과서비지원금	94,000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금	400,000		
사회적배려대상자 맞춤형프로그램 지원금	12,600,000		
소계		22건	308,240,000
기타지원금	20,760,000	교생실습비 지원금(성균관대 외)	300,000
		산재자녀장학금(근로복지공단)	5,000,000
		서울시 청소년 동아리지원사업지원금(서울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1,750,000
		서울희망교교 장학금(서울장학재단)	13,710,000
소계		4건	20,760,000
합계	369,530,000	37건	369,530,000

위원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목적에 적합한 집행을 당부하며, 향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교육행정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 학교발전을 기대하다. 다른 의견 확인하다.

위원들 의견 없음을 재청하다.

위원장 ○○○ 제9안 2019학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목적사업비 보조금 추가신청안을 표결

에 붙이다. 참석위원 13명 전원 찬성에 거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의사봉 3타)

위원장 ○○○ 다음 안건 제10안 2019학년도 보인고등학교회계 세입·세출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다.(의사봉 3타) 제안 설명요청하다.

행정실장 ○○○ 지난 2019년 8월 7일에 예.결산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안건 심의를 하였고, 승인가결 되었음을 설명한 후 안건을 상세 설명하다.

*** 예산총액은 세입·세출 각각 12,701,573,000원**

《2019학년도 세입·세출 제1차 추가경정 예산 총괄표》

(단위: 천원)

세입예산				세출예산			
관 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비 교 증△감	관 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비 교 증△감
중앙정부이전수입	0	0	0	교원보수	3,468,125	3,555,980	-87,855
광역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0	0	0	직원보수	356,402	365,800	-9,398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0,530	0	40,530	기타 교직원보수	1,360,290	1,352,180	8,110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308,240	0	308,240	교직원 복지 및 역량강화	156,124	178,140	-22,016
기타이전수입	865,512	502,911	362,601	급식관리	2,218,235	2,201,535	16,700
학부모부담수입	9,467,236	9,137,114	330,122	기숙사관리	104,200	115,200	-11,000
행정활동수입	86,161	85,328	833	보건관리	71,210	64,638	6,572
전년도이월금	1,933,894	1,000,000	933,894	교육격차해소	303,947	0	303,947
				학생복지	806,332	609,500	196,832
				교과활동	234,760	252,195	-17,435
				창의적체험활동	323,346	92,420	230,926
				방과후학교운영	189,496	0	189,496
				독서활동	60,440	63,140	-2,700
				교기육성	460,228	583,100	-122,872
				기타선택적교육활동	1,689	0	1,689
				교무업무운영	111,599	119,600	-8,001
				생활지도운영	0	0	0
				연구학교운영	71,812	73,840	-2,028
				학습지원실운영	142,437	140,450	1,987
				교육여건개선	110,015	79,320	30,695
				학교기관 운영	295,824	294,639	1,185
				시설장비유지	386,490	383,276	3,214
				학교운영협력	13,085	12,400	685
				시설확충 및 개선	1,445,487	173,000	1,272,487
				반환금	0	5,000	-5,000
				예비비	10,000	10,000	0
계	12,701,573	10,725,353	1,976,220	계	12,701,573	10,725,353	1,976,220

위원장 ○○○ 학교회계의 각종 사업은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집행하여 예산의 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화 도모하길 바란다. 학교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노력을 당부하며, 다른 의견 확인하다.

위원들 의견 없음을 재청하다.

위원장 ○○○ 제10안 2019학년도 보인고등학교회계 세입·세출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표결에 붙이다. 참석위원 13명 전원 찬성에 거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

다.(의사봉 3타)

위원장 ○○○ 다음 안건 제11안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변경안을 상정하다.(의사봉 3타) 제안 설명요청하다.

행정실장 ○○○ 기존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을 서울특별시립학교시설의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학교시설의 개방원칙, 사용허가, 사용시간, 사용료 징수기준 등을 재정비하게 됨을 설명하다.

*** 주요내용

가.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립학교시설의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2016.09.30)에 의거 학교시설의 개방원칙,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시설을 교육활동 및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학교 실정에 따라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목적으로 한다.

나. 제3조(개방원칙) ① 학교시설이 교육활동 및 학생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방한다. ② 학교시설의 사용허가 여부는 학교장이 학교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③ 학교시설의 사용목적은 교육·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기본법 제6조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학교행사·시설공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제5조(사용제한 및 취소) ① ——.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11의 경우 사용료를 반환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해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 1. 학교의 교육활동이나 학생안전 및 재산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 7.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 11. 사용허가 후 학교행사, 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라. 제7조(사용시간)

구 분	구 분	시간	비고
운동장 대주관	평 일	18:00~20:00	
	토요일	13:00~20:00	
	일요일, 공휴일	09:00~20:00	
우신관	평 일	*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	09:00~20:00	
교 실	평 일	*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	09:00~17:00	

마. 제8조(사용료)

시 설 별	사용유형	사용료(실당)		비고
교 실	○시험장소 ○수련활동 ○문화활동	1일 기준 4시간 미만	20,000	특별교실 사용시 기자재 사용료 별도
		1일 기준 4시간 이상	30,000	
인조잔디구장	○체육활동 ○각종행사	1시간 이하	200,000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300,000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00,000	
		4시간 이상	500,000	
우신관· 대주관	○각종행사	1시간 이하	200,000	우신관 사용 인원이 많은 경우 청소료를 부과할 수 있다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300,000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00,000	
		4시간 이상	500,000	

바. 제12조(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학교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학교장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여야 하며,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허가사항을 준수한다.
 2. 안전을 위하여 학교내 지정된 구역에 주차한다.
 3.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스피커나 시끄러운 소음 등을 내지 않는다.
 4. 부대시설(전기, 스피커, 천막 등)의 이용은 학교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② 사용자가 학교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는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 ④ 시설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용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사. 제 15조(준용)**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서울특별시립학교시설의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위원장 ○○○ 학교시설의 개방원칙인 “학교시설이 교육활동 및 학생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방”에 입각하여 학교의 교수학습 및 학생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하다. 다른 의견 확인하다.

위원들 의견 없음을 재청하다.

위원장 ○○○ 제11안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변경안을 표결에 붙이다. 참석위원 13명 전원 찬성에 거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의사봉 3타)

위원장 ○○○ 다른 안건이 없음을 확인한 후 학교운영위원들께 수고의 말씀 후 산회를 선언하다.

위원장 ○○○ 폐회선포하다.

〈 12시 30분 폐회〉

- 출석위원 13명 ○○○, ○○○, ○○○, ○○○, ○○○, ○○○,
○○○, ○○○, ○○○, ○○○, ○○○, ○○○, ○○○
- 불참위원 0명
- 출석교직원 5명 ○○○, ○○○, ○○○, ○○○, ○○○
- 참관인 0명
- 기록자 간사 행정실장 ○○○(인)